

환경마크에 대한 논쟁—독일연방공화국 사례

이영희 / 공학박사, 국토개발기술사

I. 背景

환경마크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생산물에 주어지는 한 표기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칭함)의 환경마크 제도의 도입은 1977년에 연방정부의 내무부 장관(당시 환경보호 주무관청)과聯邦洲 환경장관들의 主導로 확정된 후¹⁾, 1978년 말에 첫번째로 6가지 生產物 그룹에 마크 사용에 대한 허가가 확정되었고, 1979년 5월까지 48가지의 개별 생산물에 환경마크의 사용이 허가 되었다. 1992년 중반 현재, 환경마크 사용의 허가를 받은 產品의 그룹數는 72 생산물그룹이 되고 있으며, 개별 생산물의 수는 3,323 산물에 이르고 있다.²⁾

환경마크와의 가장 오랜 경험을 한 독일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논쟁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아직 첫蠹도 맞지 않은, 때문에 환경마크 관련 상품그룹도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한국의 환경마크 제도의 실시에 있어 머지않아 제기될 수도 있는 이 논쟁에 대해 각각의 立場에서 – 즉 신청자는 신청자의 입장에서, 허가기관은 허가기관의 입장에서, 소비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심사자는 심사자의 입장에서 검사자는 검사자의 입장에서 – 다른 입

장을 살펴봄으로서 결치례가 아닌 보다 나은 참으로 환경을 위한 환경마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施行錯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本稿 마지막 부분에 記述되어 있는 환경마크 – 生產物 그룹 리스트는 제조자의 생산 진로 방향 내지는 생산물의 質의 개선에 대한 방향제시가 될 것이며, 허가기관 측에서는 점차 확대해 가야 될 生產物 선정에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II. 환경마크에 대한 論議

II.1 환경마크制度에 대한 批判的 主張

독일의 환경마크 “푸른천사”는 비판에 빠져 있다. 환경마크를 두고 항상 반복적으로 같은 비판이 펼쳐지고 있다. 비판적인 이의와 질문은 근본적으로 다음 네가지 카테고리, 20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지고 있다.³⁾ 아래에 열거되는 비판적인 문제는 특히 環境意識을 가진 소비자, 환경보호에 특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 및 機構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 主務 聯邦部處는 1986년 연방 환경, 자연보호 및 원자력 안전부의 탄생과 함께 이 部處로 移轉되었다.

2) Umweltbundesamt: Merkblatt Umweltzeichen, Berlin 1992; Umweltbundesamt: Das Umweltzeichen stellt sich vor, Berlin, 1990.

3) Umweltbundesamt: 20 Argumente gegen Umweltzeichen und was man davon zu halten hat, Berlin 1990.



〈카테고리 1〉: 근본적인 비판은 환경마크의 아이디어에 조준되며, 그 핵심은 이 아이디어의 接近基盤에 놓여 있다.

1. 환경마크는 단지 법적 도구인 금지와 제한을 소홀히 한 데에 대한 現場不在證明 (알리바이)이 아닌지?
2. 환경마크가 다만 중요한 기능을 가진 산업체의 이미지 개선과 생산품의 판매량을 높히는 목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은지?
3. 환경마크는 절대적인 환경친화성을 암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상품을 사실상 증명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환경에 親和的인 것으로 생각도록 하는 오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4. 소비자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환경마크와 유사한 마크와 선전문구가 이미 수없이 많이 있지 않는지?
5. 상품테스트 재단⁴⁾이 새로운 가장 중요한 환경 특징을 테스트하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마크는 대체로 무용한 것이 아니나?
6. 환경마크가 “유해물질이 적은” 등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에 걱정없이 가까이 가도록 유혹하는데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

- 〈카테고리 2〉: 환경마크를 가질 수 있는 생산품의 취사선택이 부분적으로 비판에 오르고 있다.
7. 환경마크는 환경에 친화적인 상품개발에 대해 더 많은 자극을 제공했어야 했지 않은지?
 8. 상품그룹選定에서 정말 환경에 친화적인 產物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
 9. 유해물질이 적으나, 아직 有害物質이 함유되어 있는 생산물에 환경마크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옳은 것인지?
 10. 불필요한 산물에 환경마크가 주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카테고리 3〉: 환경마크 – 산물이 채워야 할 요구조

건에 대한 개별적인 비판

11. 환경마크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은 충분히 엄격한지?
12. 항상 단지 환경특성을 시험하는 것은 옳은 것인지?
13. 製造와 폐기물의 처리에서 등장하는 환경문제가 보다 강하게 고려되어져야 하지 않은지?
14. 건강보호가 하나의 종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 발암성, 유전질의 변경 및畸形을 초래하는 물질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것.
15. 사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지고 있는지?
16. 왜 제조사에게 내용물질의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지?

〈카테고리 4〉: 끝으로 환경마크의 사용에 대한 허가절차가 이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17. 환경마크사용의 허가절차에서의 중요한 결정은 국민이 충분히 명백히 이해할 수 있도록 되고 있는지?
18. 사용허가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지? 그 절차는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19. 환경마크사용허가에 대한 요건이 엄수되고 있는지는 왜 더 엄격히 시험되지 않은지?
20. 많은 생산자에게 환경마크는 너무 비싸지 않은지?

II.2 비판적 주장에 대한 主務 機關의 답변

〈카테고리 1〉: 환경마크 아이디어의 접근기반에 대하여 :

1. 환경마크는 단지 법적 도구인 금지와 제한을 소홀히 한 데에 대한 現場不在證明 (알리바이) (알리바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 :

4) 상품테스트재단에서는 특정한 생산물에 대하여 상시 상품의 질을 비교테스트하여 잡지에 밝히고 있음. 그 테스트에서는 환경에 대한 기준이 많이 참작되고 있음.

환경마크와 法的인 규정은 상반된 것이 아니며, 이들은 상호보완하는 상이한 유형의 道具이다. 환경마크는 생산과 관련된 환경보호를 위한 한 도구이다. 환경마크는 일반 소비자정보와 환경정보를 대리하지는 않으며, 완전히 새로운 생산기술의 탐구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간섭할 필요도 없다. 법적인 명령과 금지 또는 사용제한은 환경마크가 대리할 수 없으며, 환경마크는 국가가 필수적인 규정에 대한 그의 책임을 덜도록 할 수도 없다.

명령과 금지와 같은 法規定의 길을 밟는 것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의미있고 성공을 기약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때때로 오랜기간을 끄는 절차와 조정을 필요로 하며, 드물지 않게 역시 국제적인 범위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러한 법적인 규정이 한번 효력을 발생하면 이의 적용에는 때때로 高度의 관료 인력수요와 감시수요를 필요로 한다. 종종 나타나는 소위 “집행의 결핍”은 바로 이러한 결과이다.

환경마크는 국가적인 의무 규정도구가 아니다. 여기는 어떤 행위도 강요되지 않으며, 제조자가 환경마크를 이용하든지, 구입자가 환경마크가 있는 산물을 구입하든지 각기 그들의 자유결정에 놓여 있다.

법적 금지는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너무 엄격한 환경정책적인 법적인 촉구는 –예를 들어 개인승용차교통을 아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은 적절하지도 않으며, 더우기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확실히 “환종이”的 사용의 경우에서 유효하며, 또한 여러 다른 환경마크의 범주에서 파악되는 생산물테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환경마크는 그밖에도 후에 올 법적 규정과 다른 환경정책적인 대책에 대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예를 들어 불화염화탄화수소로 된 스프레이통, 반납하면 돈을 지불받는 유리병, 無石綿 생산물).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환경마크의 사용허락을 통하여 법적인 규정 또는 문제물질을 대체하는 것 내지는 환경에 친화적인 포장시스템의 지원을 통하여 이미 산업체가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연계효과를 가졌다.

2. 환경마크가 다만 중요한 기능을 가진 산업체의

이미지 개선과 상품의 판매고 제고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

환경마크의 목표는 환경에 친근한 產物의 개발과 이의 경제적 도구로서의 활용을 통하여 시장경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이 환경마크는 모든 경쟁자에게 열려있다. 보상은 여기에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때문에 환경마크의 의미에서 환경에 친화적인 산물을 도와서 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얻게 하는 것이며, 또한 기존의 예를 들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물을 통하여 야기된 환경문제를 줄이는 것이다. 만약 이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환경에 친근한 산물에 유리한 쪽으로 변화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시장성과 관련하여 환경마크의 목표설정에 전적으로 상응되는 바라는 효과인 것이다. 일부는 환경마크를 사용한 생산물로 40%의 판매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환경마크는 다른 생산자에게 환경에 친화적인 생산물을 개발하고, 그들의 기존의 產物을 환경에 보다 친근하게 발전시키도록 하는 자극을 제공한다. 만약 그것으로 동시에 개별 상표 내지는 개별생산자의 이미지를 개선하게 된다면,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환경마크는 새로운 환경에 친화적인 생산물을 시장에 내놓는 소규모 생산자에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그러한 생산자에게 자기 지위를 유지할 기회를 제공한다. 환경마크를 사용하는 회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속한다. 환경마크는 기업가에게 “總赦免”을 베푸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단지 우수한 산물에 대해 환경마크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환경마크의 레테르는 생산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레테르는 생산자나 기업가 또는 판매자에게 수여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물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평점을 주는 것이다.

3. 환경마크는 절대적인 環境親和性을 암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상품을 사실상 증명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환경에 친화적인 것으로 생각도록 하는 오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

각 산업, 수공업 또는 농업에서 산출된 또는 생산된 產物은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이들은 제조시 에너지소비 또는 원료소비를 통하여, 소음, 대기오

염과 수질오염 또는 최종적으로 사용후 생산물의 처리를 통해서이다. 100% 환경에 친근한 산물은 없다. 소비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환경에 중립성을 지키는 것일 것이다. 물론 의심할 바없이 환경에 친화적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그 때문에 환경마크를 획득한 삼원촉매장치(Three Way Catalytic Converter)도 폐기가스로부터 유해물질을 단지 90%밖에 제거하지 못한다. 환경의 관점에서 굉장히 수행과 월등한 최고의 해결도 그러나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를들어, 건설기계처럼 환경마크에 “低騒音”으로 나타내는 산물도 이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환경마크로부터 요구되는 소음감소 정도는 법적인 규정에 비하여 적어도 약 10dB/A가 높으며, 이것은 기계의 엄청난 개선을 묘사한다. 그러나 소음이 적은 기계도 역시 당연히 소음없이 일할 수는 없다. 평가척도는 당시 최대로 임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 되고 있다.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됨과 더불어 환경마크의 요건은 보다 강화되어진다.

환경마크는 항상 생산물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비교적인 진술이다. 환경마크-산물은 명백히 보다 나은 환경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이 환경마크의 진술의 불가피한 비교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환경마크에 표기되었던 “환경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주어짐”이라는 문귀에 항상 비판이 따랐었다. 이 비교적인 표현은 명백하지 않고 모호하였기 때문에 오해될 수도 있었다. 때문에 1988년 중반에 새로운 문귀로 바뀌었다. 환경마크에 새로이 도입된 새로운 文句 “환경마크, … 때문에”는 많은 비판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의 동의를 받았던 중립적인 진술이 되고 있다. 이후 환경마크를 부착한 산물은 이 새로운 환경마크 아랫부분 둘레주위에 이 표현을 달게 된다.”

“절대적”으로 환경에 친화적인 산물은 없기 때문에 환경마크는 단지 비교할만한 산물에 비하여 현저히 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물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환경의식을 가진 소비자를 위하여 환경마크가 있는 산물의 구입은 한 보증이다. 그의 구입에 대한 결정의 테두리에서 환경오염의 경감에 대

한 가장 가능한 것을 하기 위한 보증이다.

4. 소비자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환경마크와 유사한 마크와 선전문구가 이미 수없이 많이 있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 :

실제로 많은 제조자는 상승하는 환경의식을 선전목적으로 이용한다. “바이오(Bio)”, 생태(Oko), 자연(Natur)”과 같은 통용되고 있는 선전 미사여구 또는 “환경을 소중히 하는”, “환경에 적합한”과 같은 용어 또는 유사한 표현은 제조자로부터 자유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1987년과 1989년의 두차례의 대표적인 양케이트조사에서 질문된 소비자의 3/4이상이 “생물학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자연산물” 또는 “환경에 친화적인” 것과 같은 선전용어는 단지 특별한 허락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다는 그러한 틀린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한 개념의 사용 이전에 그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시험은 일반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선전문구는 “부정한 경쟁에 반한 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UWG)”의 테두리에서 통제되고 있다. 또한 때때로 환경마크와의 혼돈을 주기 위하여 환경마크의 높은 유명도와 그의 명성을 이용한 유사한 심볼이 사용되기도 한다. 비록 연방의 환경, 자원 및 원자로안전부가 환경마크에 대한 그의 책임을 기반으로 이것을 저지하고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담당부처가 이러한 대책을 취할 때까지 구매자는 속임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소비자는 사용된 선전문구와 표시를 비판적으로 시험해야 하고, 그리고 산물이 실제로 진짜 환경마크를 달고 있는지를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마크는 단지 다음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 연방환경청과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한 과학적 -전문적인 준비,
 - 환경마크 사용 허가기준의 확정을 위한 중립적인 심사위원회,
 - 환경마크 사용 허가 때의 규정된 절차,
 - 사전에 준비된 기준의 정확한 엄수와 시험.
- 단지 환경마크만이 소비자에게 마크의 둘레에 쓰여진 “환경마크,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이 산

물이 환경마크를 가졌는지"(예를 들어 無石綿의, 低有害物質의 또는 低騷音의, 수은이 없고 그리고 카드미움이 없고, 주로 고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를 설명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988년 말에 공포한 판결에서 "환경에 친화적"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선전 때에는 이 표현의 이유에 대한 보충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촉구하였다. 환경마크는 이 요구를 충족시켰다. 왜냐하면 이 마크의 둘레에 쓰여진(예: 환경마크, 왜냐하면 低有害物質) 이 레테르에 대한 항상 특별한 이유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脚註 5 참조). 환경마크와 함께 이 특징표시는 환경관련의 선전문구의 정당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5. 상품테스트 재단이 새로운 가장 중요한 환경특징을 테스트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환경마크는 대체로 무용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답변:

상품테스트재단이 -일부는 연방환경청의 지원과 함께 - 그들의 비교하는 상품테스트에서 그간 환경측면을 포함한 것은 기뻐해야 한다. 상품테스트재단이 테스트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을 때 집중적인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역시 이 때에 연방환경청도 참여하였다. 환경마크에 대한 새로운 사용허가 조건을 개발할 때에 상품테스트재단의 테스트결과가 고려된다. 상품테스트와 환경마크는 소비자정보에 대한 매우 상이한 도구이다.

상품테스트는 한 특정한 상품그룹의 상품에 대한 한정된 단한번의 테스트이다. 그는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형태에서의 상품을 체크한다. 그에 대해 환경마크의 경우는 총 생산물그룹에 대한 환경요건이 각각의 환경마크사용허가 요건에서 일반적

으로 확장된다. 크든, 작든, 유명 또는 무명산물이든 각 제조자는 그의 산물이 상응한 환경친화성 요구조건에 따라서 환경마크 레테르를 주는데에 응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약소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도 역시 기회를 가진다. 그러한 대안과 아직 준비중인 그러한 산물을 진홍하는 것은 환경마크의 중요한 한 과제이다. 상품테스트는 환경마크를 대체할 수 없으며, 상품테스트는 환경마크를 추가로 지원한다. 왜냐하면 많은 상품테스트에서는 임의추출유형의 통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 테스트 상품에는 많은 환경마크산물도 포함되게 되고 다른 산물과 함께 품질의 질에 대한 것이 비교 테스트되고 있기 때문이다.

6. 환경마크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에 걱정없이 가까이 가도록 유혹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

유해물질함량이 현저히 감소된 생산물에 걱정없이 접근하고 다루어도 된다는 것은 물론 허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환경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마크-락카의 여분은(약 40%에서 최대 10% 줄여진 용해물질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역시 廢水로 흘려보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수은이 적은 밧데리도 합법적으로 특수폐기물로서 처분되어져야만 한다. 꼭지를 놀르면 물이 나오는 물절약적인 便器물꼭지는 세척에 필요한 회수이상을 놀르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환경마크-산물이라도 경솔히 접근하고 다루게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구입시 환경마크-산물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5) 독일의 환경마크 :

